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68

제출연월일 2013. 3. 5.
제 출 자 중 구 청 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 중구민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나. 생활민원처리반 구성
○ 민원전용 신고창구 및 생활민원처리반 전담기구 설치
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 근무시간, 임무, 기록관리, 보고 등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방침결정 : 2013. 2. 4.
나.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다.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마. 입법예고 : 2013. 2. 5 ~ 2. 25(의견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신고 전용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처리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관련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민원은 신고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된 당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제5조(처리반의 임무) ① 처리반은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3. 가사도움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 제공
4.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
5.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6. 그 밖에 구민생활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재료비)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관리)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처리반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68)

1. 의 안 명 : 울산광역시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 제출연월일 : 2013. 3. 5.(화)
-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 위원회회부 : 2013. 3. 5.(화)
- ❍ 위원회심사 : 2013. 3. 14.(목)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 •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 • 중구민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 ❍ 생활민원처리반 구성
  - • 민원전용 신고창구 및 생활민원처리반 전담기구 설치
- ❍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 • 근무시간, 임무, 기록관리, 보고 등

4. 근거법령
- ❍ 지방자치법 제8조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권수)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3조 내용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제3조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정정 검토바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3조 내용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 제3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등"으로 수정가결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③(생략)	**제3조(구성 등)** ① ~ ③(제정안과 같음)